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발의연월일 : 2024. 4. .

발 의 자 : 남해석 위원 외 1명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자율성과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기타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록표결 원칙에 관해 규정함(안 제40조)
- 나. 주민청구 조례안의 심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55조의5)
- 다. 부정확한 표현을 수정함(안 제8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없음 (미첨부사유서 첨부)
- 다.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본문 중 “결정한다”를 “결정하며,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 또는 거수표결 등 기타 방법에 의한 기록표결로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제40조제1항 단서의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55조의5의 제목 “(주민청구 조례안의 심사절차)”를 “(주민청구 조례안의 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대표자”를 “대표자 등”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주민청구 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 요청은 일시·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5조제3항 중 “임기만료 전 사임한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문위원”을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 또는 거수표결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0조(표결방법) ① ----- ----- ----- 결정하며,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 또는 거수표결 등 기타 방법에 의한 기록표결로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후단 삭제>
②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무기명투표 또는 투표용지에 의한 기명·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삭 제>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③ ----- ----- ----- -----. ----- 제1항----- -----.
④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	<삭 제>

는 한 무기명 투표로 한다.

제55조의5(주민청구 조례안의 심사절차) <신 설>

<신 설>

<신 설>

제55조의5(주민청구 조례안의 심사) ①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주민청구 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 요청은 일시·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신 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1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u>대표자</u>로 본다. 제85조(자문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u>임기만료 전 사임한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문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u>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u> ④ <u>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⑤ ----- ----- ----- -----. ----- <u>대표자 등</u> <u>은</u>----- -----. 제85조(자문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③ ----- ---- <u>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u>----- -----.
--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비용추계 대상 아님

4. 작성자 : 의회사무국 강경희 (☎ 3153-6173)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1. 제57조에 따른 의장·부의장 선거
2. 제60조에 따른 임시의장 선출
3. 제62조에 따른 의장·부의장 불신임 의결
4. 제92조에 따른 자격상실 의결
5. 제100조에 따른 징계 의결
6. 제32조, 제120조 또는 제121조, 제192조에 따른 재의 요구에 관한 의결
7. 그 밖에 지방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 ① 지방의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의 취지(대표자와의 질의·답변

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79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민청구조례안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한 당시의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까지는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